

2022년도 전라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 공고

2022년도 전라북도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8일
전라북도지사

1. 채용개요

채용분야	채용인원	담당업무	근무예정 부서
청원경찰	3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사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○ 민원인 안내 등 대민업무 	전라북도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

※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(모집과 채용)에 따라 특정(性)을 채용할 것을 예정하여 모집하여서는 안됨.

2. 채용근거

- 「전라북도 청원경찰 관리 규정」 제6조(채용)
- 「청원경찰법」 제5조(청원경찰의 임용 등)
- 「청원경찰법시행령」 제3조(임용자격)
- 「청원경찰법시행규칙」 제4조(임용의 신체조건)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3. 시험일정

접수 및 취소기간	구분	시험장소 공 고 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접수기간: 3.2.(수) 09:00 ~ 3.4.(금) 18:00 ▪ 취소기간: 3.2.(수) 09:00 ~ 3.5.(토) 18:00 *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 중 24시간 접수(취소) 	필기시험 (1차시험)	3. 18.(금)	3. 26.(토)	4. 4.(월)
	체력시험 (2차시험)	4. 4.(월)	5. 3.(화)	5. 6.(금)
	서류전형 (3차시험)	-	5. 12.(목)	5. 13.(금)
	면접시험 (4차시험)	5. 13.(금)	5. 17.(화)	5. 18.(수)

※ 서류 제출기간(방문제출) : 2022. 5. 9.(월) 09:00 ~ 5. 10.(화) 18:00 ▶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
4. 시험방법

가. 시험단계

1차시험	2차시험	3차시험	4차시험
필기시험(3.26.)	체력시험(5.3.)	서류전형(5.12.)	면접시험(5.17.)

※ 시험단계별 前 단계에서 불합격 또는 부적격으로 판정을 받았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

☞ 2022년부터 청원경찰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를 시행하지 않음

나. 필기시험(1차시험) : 100점 만점, 과목별 20문항(4지 택1형)

○ 시험과목

필기시험과목	출제범위	난이도
① 일반상식, ② 민간경비론 (2과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일반상식(한국사 50%, 사회 50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사 : 전범위(고대사 ~ 현대사) - 사 회 : 법과 정치, 경제, 사회문화 ■ 민간경비론 : 청원경찰법이 포함되며, 임용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기본지식 등 이론능력을 평가 	고등학교 학력수준

○ 시험시간 : 10:00 ~ 10:40(40분)

○ 합격자 결정 : 과목별 40%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선발

다. 체력시험(2차시험) : 30점 만점, 3개 종목

○ 대 상 자 : 필기시험(1차시험) 합격자

○ 종 목 : 악력(10점), 제자리멀리뛰기(10점), 왕복오래달리기(10점)

○ 종목별 평가점수

종목	성별	평가점수									
		1점	2점	3점	4점	5점	6점	7점	8점	9점	10점
악력 (kg)	남	34.0~ 36.0	36.1~ 37.5	37.6~ 38.6	38.7~ 39.6	39.7~ 40.6	40.7~ 41.6	41.7~ 42.5	42.6~ 43.5	43.6~ 44.9	45.0 이상
	여	20.7~ 21.7	21.8~ 22.7	22.8~ 23.3	23.4~ 23.9	24.0~ 24.7	24.8~ 25.3	25.4~ 26.0	26.1~ 26.8	26.9~ 27.7	27.8 이상
제자리 멀리뛰기 (cm)	남	167~ 173	174~ 177	178~ 179	180~ 182	183~ 184	185~ 187	188~ 191	192~ 193	194~ 197	198 이상
	여	120~ 123	124~ 126	127~ 129	130~ 132	133~ 135	136~ 138	139~ 141	142~ 145	146~ 149	150 이상
왕복오래 달리기 (회)	남	43~ 44	45~ 46	47~ 48	49~ 50	51~ 53	54~ 56	57	58	59	60 이상
	여	21	22~ 23	24	25	26~ 27	28~ 29	30	31	32	33 이상

※ 악력, 측정 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, 제자리멀리뛰기 측정 시 소수점 이하 절사

○ 측정방법

종 목	측정방법 등
<p>악력 (kg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측정 장비: 스메들리(smedley)식 악력계 ▪ 측정 단위: kg ▪ 측정 방법: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,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<p>제자리 멀리뛰기 (cm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측정 장비: 구름판 및 모래터(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)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대 ▪ 측정 기록: cm ▪ 측정 방법: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,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,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(신체의 어느 한 부분)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.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.
<p>왕복오래 달리기 (회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측정 장비(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소 길이 20m,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-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-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- 녹음 CD : 별도 ▪ 측정 기록 : 단위(회) ▪ 측정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. - 출발신호원의 ‘출발’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. -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‘출발’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. -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. -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. -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. -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.

○ 합격자 결정 : 3개 종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30점 중 12점 이상 득점자 모두 선발

라. 서류전형(3차시험)

- 대상자 : 필기시험(1차시험) 및 체력시험(2차시험) 합격자
 - ※ 서류 제출기간 : 2022. 5. 9.(월) 09:00 ~ 5. 10.(화) 18:00 *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 - ※ 제출서류 : p9.[붙임1]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제출서류 사전안내 참고
- 합격자결정 : 응시연령 및 거주지, 신체조건 요건에 대해 적격·부적격 결정

마. 면접시험(4차시험)

- 대 상 자 : 필기시험(1차시험) 및 체력시험(2차시험) 서류전형(3차시험) 합격자
- 평정요소 : 5개항목(총 100점) ※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
◆ 면접평정요소(5개 항목, 총점 100점)

- 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자세(20점) ② 청원경찰로서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(20점)
-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(20점)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(20점)
-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(20점)

바. 최종합격자 결정

- 필기시험 성적순위와 관계없이 면접시험(3차시험) 평정결과 불합격 기준(40점 미만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5. 응시자격

가. 응시연령

- 18세 이상(2004. 12. 31. 이전 출생자)인 자로서, 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6(당연 퇴직 : 60세)에 해당하지 않는 자

나. 성별 : 제한 없음

다. 거주지 제한

- 공고일 현재(2.18.)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
라. 신체조건

- 만18세 이상으로 남자의 경우,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
-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사람
- 시력(교정시력 포함)은 양쪽 눈이 각각 0.8이상인 사람

마. 근무요건

- 주·야간(평일, 토요일 및 공휴일)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사람

※ 「청원경찰법」 시행령, 시행규칙 적용

바. 결격사유(기준일 : 면접시험 최종일)

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,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〈 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 〉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. 응시원서 접수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2. 3. 2.(수) 09:00 ~ 3. 4.(금) 18:00 / 3일간
- 접수방법 :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 접속하여야 합니다.(인터넷 접수만 가능)
 - ※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,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 (☎1522-066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수수료 : 없음

나.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

-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 발표, 서류전형, 기타 시험과 관련된 공지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buk.go.kr>) 『시험 임용』 게시판에 공고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(JPG)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(사진규격 : 3.5cm×4.5cm 기준, 해상도 100dpi 이상)
-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연락불능이나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 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서 출력합니다.

7. 참고 및 유의사항

- 가.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기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전라북도 홈페이지(<http://www.jeonbuk.go.kr>) 「시험 임용」 게시판에 공고합니다.
- 나.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「청원경찰법」 제5조(청원경찰의 임용 등)의 규정 등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(승인기관 : 전북지방경찰청) 되지 않을 경우 등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임용취소 등 사유 발생시, 면접시험결과 차 순위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분 야	담당자	연락처
시험관련 문의	원서접수 등 시험일정	총무과 공무원채용팀 이승준 주무관	☎ 063) 280 - 4219
근무관련 문의	업무 및 근무여건 등	총무과 총무팀 김해영 주무관	☎ 063) 280 - 4206

붙임1**필기시험 및 체력시험 합격자 서류전형 제출서류 사전안내**

연 번	제 출 서 류	비 고
1	▪ 자기소개서 3부 (서식1)	모든 응시자 제출
2	▪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(서식 2)	
3	▪ 주민등록초본 1부 (주소 이력사항 포함) 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	
4	▪ 채용 신체검사서 1부 (서식 3) ※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, 병원, 의원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,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후 방문	

※ 유의사항

-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**원본을 지참**하여 대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**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하며,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주민등록초본은 **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**이어야 하며,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 또는 관인이 있어야 하며, 제출된 서류 **확인 결과 응시원서 및 답안지 기재사항과 다른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 또는 무효**처리 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전라북도 청원경찰 채용 시험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

-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·면접심사 등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·이용됩니다.
-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청원경찰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.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
- 필수항목 : 성명(한자 포함), 생년월일, 주소, 이메일, 자택전화, 휴대폰
- 선택항목 : 학력, 경력, 자격, 우대사항,

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
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. 동의하지 않습니다.
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-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,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·관리(임금지급, 경력증명 등)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.
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.

4. 기타사항

-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. 선택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2년 월 일

동의자 성명 :

[인 또는 서명]

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구 분	② 시험실시 기관	③ 응시직명	④ 응시번호	⑤ 성 명	사 진 (3.5cm × 4.5cm) ※ 압인 또는 계인
⑥ 검사 시					
⑦ 재 사용				⑧ 주민등록번호	

검 사 내 용

키	cm	체 중	kg
허리둘레	cm	혈 압	
(교정)시력	좌: ()	색 신 (색 각)	(교정)청력
	우: ()		
종 양 질 환		이 비 인 후 질 환	
호 흡 기 질 환		심 혈 관 질 환	
소 화 기 질 환 (간 질 환 포함)		신장/비뇨기계질환	
내 분 비 질 환		혈 액 질 환	
신 경 질 환		피 부 질 환	
근골격계 질 환		안 질 환	
정 신 질 환		흉부 X선 검사	
기 타			

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.

2022년 월 일

검사자(담당의사)

(서명 또는 인)

검사 결과 합격 여부	[]합 격 []판 정 보 류	합격 사유	
판정보류 사유 (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)	*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		

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.

2022년 월 일

검진기관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유효기간	판정일부터 1년
------	----------

유의사항 및 작성방법

[응시자]

- 1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.
 - 가.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.
 - (예: 인사혁신처, 국세청 등)
 - 나.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.
 - (예: 9급 세무직, 7급 전기직 등)
 - 다.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.
- 2.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[검진기관]

- 1.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(押印) 또는 계인(契印)을 해야 합니다.
- 2. “검사 내용”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.
 - 가. 검사 결과 기재의 예: 질병명(심부전증, 백혈병, 척수종양 등)을 적거나 "정상", "양호", "이상 없음" 등으로 적어야 함
 - ※ 필수사항: 질병이 있는 경우 "합격" 또는 "불합격"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
 - ※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 - 나.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.
 - (작성 예시) 임신부인 경우 “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” 라고 적습니다.
- 3. “검사 결과 합격 여부”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[]안에 “√”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※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.
 - 가. 합격 사유 기재의 예
 -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에 해당하지 않음
 -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(예시: ‘만성골수성백혈병’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(官解)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)
 - 나.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
 -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(예시: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)
 - ※ 응시자의 질환이 ‘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
- 4.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라야 합니다.